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12. 15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2. 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0. 12. 5.
다. 상정일자 :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위원회(2000.12.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해석 환경과장)

가.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본 조례중 정화시설의 야간 청소지역지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및 합병정화조 관련 규정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정비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 안 제11조, 안 제17조제1항)

○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규정은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5조, 안 제10조제2항)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상위법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으로 규정함.(안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함.(안 제15조제1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함.(안 제19조)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제출 사항은 삭제함.
- 과태료의 납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규정함.
-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등에서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및 합병정화조 관련 규정 용어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정비하고, 안 제5조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관련 규정을 삭제 하며, 안 제7조에서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상위법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으로 규정하였음.
안 제15조에 수수료 감면 대상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규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9조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 및 동법시행령(2000. 8. 17 대통령령 제16953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 및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불필요한 규제정비 계획과 관련,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지역지정 등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제4조에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는 구청장이 하는 것인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예.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오수정화시설 내부 청소는 의무사항인지? 그리고 위반시는 어떻게 하는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처리용량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오수정화시설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월 평균 5건정도 과내료를 부과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 12.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본 조례중 정화시설의 야간 청소지역지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및 합병정화조 관련 규정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정비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3항, 안 제11조, 안 제17조제1항)

나.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규정은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5조, 안 제10조제2항)

다.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상위법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규정함.(안 제7조)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함.(안 제15조제1호)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함.(안 제19조)

- 과태료부과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제출사항은 삭제함
- 과태료의 납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규정함

-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함

3. 개정근거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2.8 법률제5864호)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000.8.17 대통령령 제16953호)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0.5.23 환경부령 제94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0.11.15~11.2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구칙심의회 심의·의결(2000.12.4)

다.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등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조제목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를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①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 조제목 "정화시설 내부청소통지"를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통지"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화시설"을 각각 "오수처리시설등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법 제58조제1항제5호"를 "법 제58조제2항제6호"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 중 "정화시설"을 각각"오수처리시설등"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조제목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을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등의"로, "분뇨수집운반"을 "분뇨등 수집운반업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등"으로 동조제1항제2호의 "정화조"는 "단독정화조"로 동조 제1항제3호의 "오수정화시설"은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의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을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를 분뇨등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한"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정화조를"을 "오수처리시설등을"로 한다.

제15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제17조제1항 본문중 "정화시설"을 각각 "오수처리시설등"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징수결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②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외의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관련.별표 1, 동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및 동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및 동조제4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분뇨자가수집·운반의 신고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술능력	차 량	차 고	기 타
분뇨자가 수 집 운 반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차량1대당 당해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상	소독조 1조이상

〈별표 3〉

분뇨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뇨		18ℓ	230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기 본	0.75㎥	17,680	
	초 과	0.1㎥당	1,160	

〈별지 제1호서식〉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규/변경/폐쇄] 신고서

신고인	상 호 (명칭)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수집·운반 대상	소 재 지			
	물 량			
	종 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규/변경/폐쇄] 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마포구청장귀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장비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변경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별지 제2호서식〉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

신고인	상 호 (명칭)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수집·운반 대상	소 재 지			
	물 량			
	종 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 보관용)

마포구 | 440

납세번호	기관	과	검	회계	과목	세목	년도	월	기분	과세번호	검

납기내	까지

납 세 자 :
주 소 :
과세물건 :

납부기한	까지	납 기 후 금 액
금 액		
합계세액		
부과근거		
담 당 자		

부 과 내 역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청 장

※납부장소:전국은행본·지점(한국은행제외)농협, 수협, 축협중앙회본·지점,우체국 및 서울시내새마을금고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 납 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납세번호	기관	과	검	회계	과목	세목
	년도	월	기분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

납부기한	까지
금 액	
합계세액	
금 액	
합계세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
마 포 구

영수필통지서 (분) (세외수입) (납세기관용)

마포구	440

납세번호	기관	과	검	회계	과목	세목	년도	월	기분	과세번호	검	기한	까지	
													원	

H [S] [C] [C] [C]

※이 줄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납 세 자 :
주 소 :
과세물건 :

납부기한	까지	
금 액		
합계세액		
부과내역		

발급부서 :
수납부서 :
담 당 자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OCR)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귀하 (수납인)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 보관용]

마포구 | 440

납세번호	기관	과	검	회계	과목	세목	년도	월	기분	과세번호	검

납기기한	까지

납 세 자 :
주 소 :
과세물건 :

납부기한	까지	
금 액		
합계세액		
부과근거		
담 당 자		

부 과 내 역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청 장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납부장소:전국은행본·지점(한국은행제외)농협, 수협, 축협중앙회본·지점,우체국 및 서울시내세무서금고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 납 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납세번호	기관	과	검	회계	과목	세목
	년도	월	기분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

납부기한	까지
금 액	
가산/중가산	
합계세액	
금 액	
합계세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
마 포 구

영수필통지서 (체납분)

(세외수입)
(납세기관용)

마포구	440

납세번호	기관	과	검	회계	과목	세목	년도	월	기분	과세번호	검		까지		
													원		

	(S)	(C)	(C)	(C)
H				

※이 문서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세 자 :
주 소 :
과세물건 :

납부기한	까지	
금 액		
가산/중가산		
합계세액		
부과내역		

발급부서 :
수납부서 :
담 당 자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OCR)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귀하 (수납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①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 제3항 및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①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등 ————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1. 단독정화조————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통지)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1회이상 청소의무사항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통지)① ——— 오수처리시설등의 ———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58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법 제58조제2항제6호 ——— ——— 오수처리시설등의 ———
③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 오수처리시설등 ———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 오수처리시설등 ———
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①('99.10.11삭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②구청장은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제7조(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구청장은 법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에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 ———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 ———
제9조(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①구청장은 법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① ——— ——— ——— 오수처리시설등의 ——— - 분뇨등 수집운반업자 ——— ——— ———
②~⑤(생략)	②~⑤(현행과 같음)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① ——— ——— 오수처리시설등 ——— ——— ——— ———

현 행	개 정 안
1.(생략)	1.(현행과 같음)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정화조 ————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 ————
②야간청소 요금은 별표3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며 대상 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삭 제)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를 분뇨등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처리시설등을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수료의 감면)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3.(생략)	**제15조(수수료의 감면)**————————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3.(현행과 같음)
제17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①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8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7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①———— —— 오수처리시설등 ———————— ——— 오수처리시설등 ———————— —— (삭 제) ———————————— ———————————— ———————————— ——— ②(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구청장은 법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항의 적발, 인지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법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징수결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고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②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 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고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99.10.11)	④구청장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⑥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외의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⑦구청장은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